완주삼봉 A-2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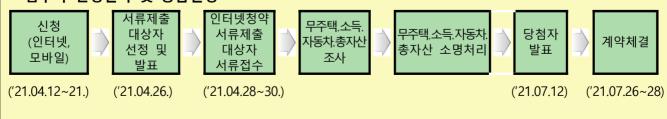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03.31]

1. 건설위치: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19.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 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시항은 이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 등에 대한 설명과정에서 상담사와의 의사소통 오류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완주삼봉 A-2블록 행복주택(274세대)은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공분양(546세대)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 완주삼봉 A-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31.)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사람 또는 만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③ 한부모가족 : 만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 ※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급		세대	당 계약	면적(m²)			임디	조건		전환	최대전	데화시 -				
공급	공급 대상	호	수	주거	주거		밖의 B면적		임대	보증금(친			최대 거주		입주				
형별		우선 공급	일반 공급	ㅜ/1 전용	구기 공용	기타 공 용	주차장	합계	계	계약금	잔금	임대료 (원)	한도액 (천원)	임대 보증금 (천원)		기간 (년)		예정	
55A1	신혼부부·	83	84	55.42	22,0026	E 7276	40 4707	123.7299	38,360	3,836	34,524	207 790	(+) 24,000	62,360	87,780				
JJA1	한부모가족	65	04	33.42	22.0920	3.7370	40.4797	123.7299	30,300	3,030	34,324	524 207,780	(-) 31,000	7,360	272,360	,360			
55.02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	2	55.42	22.0026	5 7376	<i>A</i> 0 <i>A</i> 707	123.7299	38,360	3.836	34.524	207.780	(+) 24,000	62,360	87,780				
SSAZ	(주거약자용)			33.42	22.0920	3.7370	40.4737	123.7299	30,300	3,030	34,524	207,780	(-) 31,000	7,360	272,360				
59A1	신혼부부·	17	17	59.39	22.6752	6 1 106	42 270E	132.5933	41,120	4.112	27.000	222.730	(+) 26,000	67,120	92,730				
JJA1	한부모가족	17	17	39.39	23.0732	0.1400	45.5795	132.3933	41,120	4,112	37,008 2	222,730	(-) 34,000	7,120	293,560		벽식/		
59A2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5	5	59.39	23 6752	6 1486	43 3795	132.5933	41,120	4.112	37,008	222,730	(+) 26,000	67,120	92,730	6~10	평지붕 <i>/</i> 개별 난방	'22.6	
	_ , _ , (주거약자용)			33.33	20.0752	0100	13.5733	.52.5555	,.20	.,	3.7000	222,730	(-) 34,000	7,120	293,560				
500	신혼부부·	42	40	50.05	22.5207	64424	42.4244	121 02 12	40.000	4.000	26.702	224 420	(+) 26,000	66,880	91,430				
59B	한부모가족	13	12	59.05	23.5397	6.1134	43.1311	131.8342	40,880	4,088	36,792	792 221,430	(-) 33,000	7,880	290,180				
	신혼부부·		4-	50.06	22 5 427	64445	42.420.4	121.0566	10.000	4000	26.702			(+) 26,000	66,880	91,430			
59C	한부모가족	17	17	59.06	23.5437	6.1145	43.1384	131.8566	40,880	4,088 36,792	4,088 36,792	088 36,792 221,43	221,430	(-) 33,000	7,880	290,180			

- 금회 공급하는 완주삼봉 A-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274세대)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546세대)과 혼합된 임대 주택입니다.
- ※ 동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합니다.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완주삼봉 A-2블록 신혼희망타운 전세대(274호)는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해당지구 바닥재는 '강화합판마루'로 설치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 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 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 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재청약 기준 참고)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u>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u>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3-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31.) 현재, <u>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u> 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⑩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⑪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⑪와 ③~⑥을 모두 갖춘 자

- ①-②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 ①-④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①-⑤ (한부모가족)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자
-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가구원수	일반 신혼부부	 	맞벌이 신혼부부		
기구권구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2인	5,018,789원 이하	110%	5,931,296원 이하	130%	
3인	6,240,520원 이하	100%	7,488,624원 이하	120%	
4인	7,094,205원 이하	100%	8,513,046원 이하	120%	
5인	7,094,205원 이하	100%	8,513,046원 이하	120%	
6인	7,393,647원 이하	100%	8,872,377원 이하	120%	

-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7,393,647원)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384,376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97만원 이하일 것
-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 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 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 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 건설지역(완주군) 또는 연접지역(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임실군, 진안군, 논산시, 금산군)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전라북도 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31.) 현재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 ※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 순위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자

•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완주군에 3년 이상 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완주군에 3년 미만 거주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기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저축 포함) 납입횟수	납입일에 월납입 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이하 납입한 자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신청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람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순위 →추첨

3-2. 신혼부부·한부모가족(주거약자용)

■ 주거약자용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31.) 현재, 3-1.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주거약자의 요 건을 갖춘 자

- ※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 ※ 주거약자 아닌 자가 주거약자형을 신청할 경우 탈락처리 됨

주거약자

-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 ②「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④「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③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⑥「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 건설지역(완주군) 또는 연접지역(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임실군, 진안군, 논산시, 금산군)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전라북도 지역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 주거약자용 일반공급의 경우 같은 순위내에서 경쟁 발생시 주거약자용 배점합산에 따라 입주자 선정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경쟁시 배점

구 분	3점	2점	1점
①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3인 이상	2인	1인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LIE UIYF	3년 이상 5년	1년 이상 3년
* 완주군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미만	미만
③ 장애정도	중증장애인*	-	그 외 장애인

* 중증장애인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함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 ① 공급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전원
-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전혼자녀 포함)
-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전혼자녀 포함)
-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 ⑥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 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자매는「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 * 태아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31.) 현재 주거약자용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 ※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 ※ 주거약자 아닌 자가 주거약자형을 신청할 경우 탈락처리 됨

• 순위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자

※ 주거약자용 우선공급의 경우 같은 순위내에서 경쟁 발생시 주거약자용 배점합산에 따라 입주자 선정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경쟁시 배점

구 분	3점	2점	1점
①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3인 이상	2인	1인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3년 이상 5년	1년 이상 3년
* 완주군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미만	미만
③ 장애정도	중증장애인*	-	그 외 장애인

^{*} 중증장애인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함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 ① 공급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전원
-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전혼자녀 포함)
-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전혼자녀 포함)
-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 ⑥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 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자매는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 * 태아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입주자 선정 순서
スコのけしの	우선공급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주거약자용	일반공급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추첨

[※] 동일 배점으로 인한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신청접수	서류접수 (서류제출대상자만 제출)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인터넷(모바일) 접수] - 접수기간: '21.4.12(월)10:00~4.21(수)18:00 - 접 수 처: PC인터넷 (https://apply.lh.or.kr), 모바일 (App명칭: LH청약센터) ※ 토,일요일 포함 ※ 인터넷(PC·모바일) 청약신청은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현장 접수] - 접수기간: '21.4.19(월) 10:00~16:00 - 접 수 처: LH 전북지역본부 본관 4층 주거복지사업2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 단, 점심시간(12:00~13:00)은 접수불가 * 현장접수 시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접수 가능(공고문 5. 신청서류 참고)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ARS(1661-7700) - 서류제출기간 '21.4.28(수)~4.30(금) 10:00 ~ 17:00 - 제출방법 :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 * 제출장소 : LH 전북지역본부 본관 4층 주거복지사업2부 * 등기우편 발송주소 (우) 55058 전북 전주시 완산구홍산로 158(효자동2가 1333-1) ※ 등기우편은 '21.4.30 우체국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10:00~16:00 ※ 현장계약 장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효자동

-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만65세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함)는 신청접수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시당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PC) 및 현장 청약 방법

- o 인터넷(PC) 신청자
- * 청약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신청(임대주택)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o 현장 신청자(65세 이상 고령자로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현장접수일('21.04.19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에 해당 서류를 모두 지참하여 접수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모바일) 청약 방법

- o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센터)→임대주택→청약신청(임대주택)
 - · 앱 ("LH 청약센터"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방법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는 '21. 04. 26.(월) 16:00 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 신 분은 소정의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21. 04. 28(수) ~ 04. 30(금)] 내 업무시간[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받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21. 04. 30)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서류제출 장소(등기우편발송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4층 주거복지사업2부 "완주삼봉 A-2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담당자"
- o 현장 신청자 : 접수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o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 o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모바일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o기타사항

- · 인터넷(PC) **청약 접수기간은 <mark>접수시작일 '21. 04. 12(월) 10:00 ~ 접수마감일 '21. 04. 21(수) 18:00 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mark>
 -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 인터넷(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mark>접수시작일 '21. 04. 12(월) 10:00 ~ 접수마감일 '21. 04. 21(수) 18:00 까지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mark>
-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1.03.31.)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비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통
주민등록표등본 (상세발급)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상세발급)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우선공급신청자의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의 초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발급)	· "한부모가족 "으로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 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1통
임신진단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만 제출	1통

■ 세부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센터
신	예비 신 혼부부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제출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동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제출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주민센터
혼부부계층	해당자만 제출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경우 및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고일 현재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시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국민연금공단 해당 직장 국사성 해당 직장(세무서)
재청약자		· 행복주택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입주자가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여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 자녀의 기본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주민센터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서류

대상(해당)자	제출서류	발급처
①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주민센터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 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12.7.1이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 '12.7.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④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각 지청
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센터 (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함 (단,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소멸됩니다.)

■ 계약안내

- 전자계약 [기간 : 21.07.26 10:00 ~ 07.28 16: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 점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u>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u>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계약체결 절차】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함
-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

○ 현장 계약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날짜 [21.07.28(수) 10:00 – 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배우자
• 계약자 도장*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하증	관계입증서류
(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배우자 외의 자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계약체결장소 : LH 전북지역본부 본관 2층

7.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 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m²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 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①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분	산정방법
Т	正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
소득		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부 동 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 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 동 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총 자 산	금융자산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지방세법」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 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	통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월평균 보수액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근로 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 득	- 국세청 종합소득
	재산 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 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 금융정보 조회결과

			발생하는 소득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 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 정)	, , , , , , , , , , , , , , , , , , , ,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모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총 자산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 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 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 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자산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 지방세정 자료

	어업에 대한 권리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 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금융기관 대출금	
부채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총자산 산정 시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임대보증금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8.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및	입주자격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최대 거주기간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자 재청약에 관한 기준	■ 재청약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재청약이 가능합니다. - 출산, 입양, 사망 등의 사유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 청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근거지가 변경된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비입주자	, _ , _ ,	나격 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갱신계약 등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	

•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행복주택의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mark>가구원수별 가구당</mark>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	비율
그 그 기군 고의 미월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배우자가 소 득이있는 경우'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신청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신청 서류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지구 및 단지특성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 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에 따른 지하 1층 주차장의 차로 높이는 2.7m, 지하 2층은 2.3m입니다.

■ 지구 여건

- 지구 서측으로 익산• 포항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가 입지하여 있으며, 익산IC, 삼례IC, 완주IC를 통해 접근할 수 있음
- 지구 북쪽으로 완주일반산업단지, 남쪽으로 전주도심(송천동)과 연결되어 있음
- 지구 북동측에 고가차로가 위치하고 있음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 될 수 있음
- 지구의 개발사업은 현재진행중이며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 될 수 있음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 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지구 초·중·고등학교는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학교설립관련 법령·지침 변경, 블록별 입주시기, 공동주택 분양규모(세대수), 학생수용여건, 학생수용계획 등에 따라 학교설립(개교) 시기 및 학교설립 대상학교는 조정될 수 있음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지구 내 학교, 공공시설 등의 용지는 해당 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음
- 지구 서측 남북방향으로 익산포항고속도로로 인해 인근 지역에 소음 및 분진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지구 내 서측 근린공원에 저류지가 계획되어 있음
- 지구 내에 위치한 저류시설은 홍수 등 비상시 빗물을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 평상시에는 수 면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

■ 단지 외부여건

- 본 단지는 완주삼봉지구 조성공사에 포함되어 있어 입주시 조성공사 및 아파트 단지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 남측에는 공동주택용지, 북측에는 근린공원과 종교시설이 계획되어 있음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 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단차 발생 시 옹벽 등이 설치될 예정임
- 인접 공원.녹지 및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레벨차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외의 조경석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주변 도로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가로등, 공원, CCTV 및 교통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이 단지 인근에 설치될 예정으로 전력, 수도, 가스, 지역난방 등 기반시설 설치에 따라 지상에 시설물이 노출될 수 있음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 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부여건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될 예정임.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 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1층 하부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제연 휀 및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어, 일부 세대의 경우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음
- 본 단지의 지하 1층 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2.7m, 지하 2층은 2.3m로 시공됨
- 단지 내 지상주차장은 없음. 다만 소방활동 등 특수한 상황을 위하여 비상차로가 운영되며, 이로 인하여 세대에 소음, 자동차전조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구 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지하층 특성상 하절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통행에 지장이 없는 구간에는 덮개가 없으며, 구배 없이 시공되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휀룸이 설치되며 휀룸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근동은 차량 진·출입 시 경보음 발생과 차량전조등 불빛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전기실 및 발전기실 근접동(205동)은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근접동(204동)은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단지 내 쓰레기 분리수거함,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자전거 보관소,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옥외운동시설 등의 시설물과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이 설치될 예정으로 동별 이동거리가 상이하여 불편을 느낄 수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옥외 쓰레기 수거함이 아파트 각 동별 1층에 설치되어 있어, 1층을 포함한 근접한 저층세대는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세대내로 유입될 수도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접근이 예상되

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자전거보관소는 동별로 설치되지 않고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될 예정이 며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동될 수 있음
- 각 동 전면 주변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 소방관련 공기안전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조경 식재가 제한될 수 있으며 특히 1층 세대의 경우 식재 제한에 따른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옥외공간에 적용된 놀이, 운동, 휴게시설물 및 마감자재는 현장여건 상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관련법령에 따라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 단지 내 조경시설물, 식재, 포장계획 등은 각종 인·허가 또는 현장여건을 따라 재료·형태·색채·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등 주민 공동이 사용하는 야외 시설물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보도 조경 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
-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입주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본 단지는 신혼희망타운으로서 경로당은 설치되지 않으며, 국공립어린이집, 방과후교실, 공동 육아나눔터는 지자체 운영 협의 결과에 따라 운영 가능함
- 국공립 어린이집, 방과후교실, 공동육아나눔터 내부 시설물은 운영기관에서 설치할 예정이며, 운영 이전에 내부 시설물(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음
- 피트니스센터에 운동기구(일부품목)가 제공될 예정이며 설계 및 제공되는 운동기구에 대해서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입주민 부담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에 설치되는 이동이 가능한 의자, 소파 등 이동식가구 등 기타 비품은 일체 제공되지 않으며 입주민들의 부담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일부세대는 E/V 승강로 및 기계실과 인접되어 있어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음
- 동별 승강기 설치 인승, 속도 적용기준은 관련 법률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세대 조합별 운행층수에 의한 규격으로 적용 설치될 계획이며,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승강기 이용 세대수 차이가 있음
- 202동 옥상에 지상파(디지털)안테나 및 무궁화위성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수신여건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202동, 204동, 206동 옥상에 구내용 이동통신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수신여건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이 설치되며, 일부동.일 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될 수 있음
- 202동, 203동, 204동, 205동 지붕층에는 태양광발전설비 집광판이 설치되며, 태양광모듈 사양에 따라 각동별 설치면적은 달라질 수 있음
- 한전 특고압 PAD/SW 설치로 인접 일부세대 미관을 저해할 수 있음
- 본 단지에는 KT "GiGA Genie 홈 IoT" 앱을 통한 AI 아파트 서비스가 제공됨

- * 제공되는 ICT 서비스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 □ 무상제공 ICT 서비스

구 분	항 목	서비스이용료
세대내	KT AI 아파트 서비스	무료

-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아파트 세대 내 조명, 난방 등 기기를 조회하고 제어할 수 있음
- KT기가지니 단말 사용 시, 음성 제어를 포함한 다양한 추가 AI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음
- AI 아파트 서비스는 통신사와 무관하게 사용 가능함
- □ KT AI 아파트 서비스 유의사항
 - KT AI 아파트는 무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이용신청(가입)이 필요
 - KT AI 아파트 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 됨
 - AI 스피커(기가지니)와 스마트폰 앱은 통신사와 무관하게 사용하실 수 있음
 - AI 스피커(기가지니) 서비스는 유선 인터넷 환경 하에서 지원되는 서비스 임
 - AI 스피커(기가지니) 서비스 중 일부는 KT 상품(유료) 이용자만 사용 가능함 (KT 인터넷 전화, TV, 지니뮤직 등)
 - IoT 가전 기기는 별도 구매하여야 하며, 기기 연동을 위하여 댁 내 WiFi 환경이 제공되어야 함
 - IoT 가전 및 Home to Car 서비스는 KT 연동 가능 모델에 한하여 서비스 제공됨
 - 견본주택과 홍보영상의 서비스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미구현 또는 성능 개선 등 서비스 항목이 변경 및 종료 될 수 있음
- 택배보관함은 각 동이 아닌, 일부 동 인근에 그룹별로 통합설치될 예정임
- 근린생활시설은 분할되지 않는 토지로서 단지 내 아파트 대지면적과 일정 면적을 지분으로 시공할 예정임
- 단지여건을 확인하신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단지 내에는 「주택법」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임. 이와 관련, 공사는 아파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해당 지자체와 체결할 예정이나, 입주(예정)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이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거 본 단지의 행복주택 세대내 일부 자재 (타일, PL창호, 가구류 등)는 중소기업 자재를 사용하며, 이에 따라 공공분양 세대와 경미한 성능/디자인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팸플릿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성능향상 등을 위해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팸플릿 등에 표현된 마감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 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음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202동, 204동, 206동의 옥상과 지하주차장 휀룸 내부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서비스안테나를 지하층, 데크층 및 옥외에 설치할 예정임. 단, 설치장소 및 설치수량은 현장 여건 및 이동통신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 2층과 최상층 세대의 경우 거실 및 발코니에 동작감지기가 설치되며, 기타층 세대의 경우 거실에 동작감지기가 설치됨

- 현관, 발코니 등 바닥의 단차는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4층부터 최상층까지 대피공간이 시공되며, 3층부터 10층에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 내에 완 강기가 설치될 예정임. 그에 따라 외부창호 형태 및 발코니 문의 재질이 상이함
- 세대 발코니 내 대피공간은 화재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단, 2층이하 세대의 경우 법적기준에 근거하여 창고 등의 기타시설로 활용할 수 있음)
- 대피공간은 철제 방화문이 설치될 예정으로, 외기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설 치되는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 대피공간(1~3층은 동일 위치)의 창호는 3층 이상은 안여닫이창, 1~2층은 미서기창이 설치됨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세대분전반은 현관 인근에 설치되고 통신단자함은 신발장내에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음
- 마감자재 내역은 주택 타입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 길이 및 높이, 실외기 설치 공간 등) 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 외벽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음
- 세대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 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벽걸이 TV 설치 시 별도 보강하여 설치하는 등 주의를 요함
- 주방가구 하부에는 바닥 마감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 경은 불가함
- 자재 수급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창호, 가구, 타일, 석재, 바닥재, 벽지 등의 마감자재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와 다소 상이한 색상과 무늬의 자재가 설치될 수 있음
-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한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에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임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최상층 세대 및 일부 세대의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조명기구는 벽부형으로 설치됨
- 세대 무인경비 동작감지기는 1, 2층 및 최상층은 발코니, 침실의 창호 측면부 각 1개소에 설치되며, 그 외의 층은 거실 창호 측면부 1개소에 설치됨
- 홈 네트워크시스템 세대단말기(WallPad10"LCD)는 방문자 확인, 현관문 열림, 홈 제어 (가스차단, 난방제어, 방범기능, 조명제어, 택배 및 차량 도착알림), 스마트폰 연동기능을 제공
- 발코니에는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 않고, 세탁기 및 환기유닛 전원용 콘센트에 한하여 설치됨
- 팸플릿 등에 적용된 자재 중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나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이 일부 조 정되거나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는 등 수납이 제한적임
- 주방가구 중 씽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 씽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므로 그에 따라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함
- 급수 계량기함은 세대공용PD에 설치됨
- 주방가구, 반침가구, 조명기구, 월패드, 소화용기구, PVC배관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이 사용될 예정이며, 팸플릿 및 사이버 견본 주택에는 유사 이미지를 구현한 것으로 실제 설치 시 선정된 업체에 따라 디자인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설비 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음
- 당해 지구의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예정으로서 이 경우 세대내 발코니 등 내부에 난방기가 설 치됨에 따라 미관이 저해될 수 있음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별도배관을 설치하므로 고층부와 배관이 상이함
- 수도꼭지(세탁, 손빨래, 물뿌리기)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에는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음
- 에어컨용 냉매배관은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1, 침실2(59B는 침실2가 아닌 침실3)는 벽걸이형을 기준으로 매립되며, 이 경우 추후 실제 설치되는 에어컨 형태(스탠드형 혹은 벽걸이형)에 따라 에어컨실내기 매립박스가 차폐되지 않을(노출될) 수 있음
- 타입별로 측면 또는 후면에 에어컨 실외기 공간이 시공되며, 에어컨 가동 시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소음 및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음
- 발코니 세대환기용 유니트 및 덕트가 설치되며 세대 타입에 따라 실외기실에도 환기시스템에 설치 될 수 있음
- 세대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방식(강제급기+강제배기)을 적용하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져(공기 배출구)는 거실과 침실 천장에 시공되며 작동시 소음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세대 천장에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됨
- 세대욕실 천정에 점검구가 설치됨
- 소방 관련법에 따른 제연설비가 설치된 아파트에는 일부 세대의 현관 출입문에 차압측정공이 설치됨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 본인 또는 부양기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기타사항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 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 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 만 19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대출 가능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자동 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9.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주택법」 제39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 3조에 따라 인증된 공동주택의 항목별 성능등급을 표시함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
21.	자연지반 녹지율	**
	생태면적률	**
23.	비오톱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콘텐츠	**

마. 화재 • 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6.	피난설비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구 분	적용 여부	구 분	적용 여부
측벽	적용	바닥(층간바닥)	적용
외벽(직접면)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외벽(간접면)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창호(직접면)	적용	고효율LED	적용
창호(간접면)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지붕	적용	절수절비	적용
바닥(직접면)	적용	고효율설비	적용
바닥(간접면)	적용		

녹색건축 예비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일반(그린 4등급)	1등급

[※] 상기 성능등급은 공급시점의 설계도서 및 자재 적용계획에 대하여 인증기관을 통해 평가받은 사항으로, 추후 입주일 이전 본인증 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완주삼봉 A-2	한국토지주택공사	㈜두산중공업 (606-81-04684)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자체감리

11. 주거약자용 주택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주거약자 및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거실	조명밝기 300~400럭스(lux)	청각장애인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욕실	수건걸이 1.0 ~ 1.2m 높이에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 설치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청각장애인	
기타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가능합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욕실 (1개소에 한함)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주동.통로 유도시설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동현관 입구에 램프난간, 계단난간, 내부 경사로 난간에 점자스티커 부착	시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 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 준공 6개월 전까지 추가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공정진행 정도에 따라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2부

팸플렛 배부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본관 4층 주거복지사업2부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임대문의	· 인터넷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당첨자 ARS	1661-7700		
인터넷 청약	· PC :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접수처 약도	아르팰리스 휴먼시아		
도로명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LH 전북지역본부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03.31



전북 지역본부